



제434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추진실적 제출 및 정보공개 대상에 부대사업 추가〉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86호)

2026. 4.

재 정 경 제 기 획 위 원 회

전문위원 임명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추진실적 제출 및 정보공개 대상에 부대사업 추가 ..... | 2 |



##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나. 제 출 일 : 2026. 2. 26.

다. 회 부 일 : 2026. 2. 2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이 그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부대사업의 경우 그 운영현황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부대사업의 경우에도 국유·공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부대사업의 이익은 현행 법령에 따라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등 정부의 재정 투입 및 시설 사용자의 사용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의 관리가 필요하며 관련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제출 및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에 부대사업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제1항 및 제51조의3제1항).

### Ⅲ. 검토의견

#### 1. 추진실적 제출 및 정보공개 대상에 부대사업 추가(안 제51조의2 제1항 및 제51조의3제1항)

| 현행                                                                                                                                                                                                                                                                                                                                                                                                                 | 개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무관청은 <u>민간투자사업</u>의 추진방식별로 그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li> </ul> </li> <li>○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무관청은 <u>민간투자사업</u>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다만,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음</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무관청은 <u>민간투자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함)</u>의 추진방식별로 그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li> </ul> </li> <li>○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무관청은 <u>민간투자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함)</u>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다만,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음</li> </ul> </li> </ul> |

현행법상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규정<sup>1)</sup>하고 있으며,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sup>2)</sup>하고 있음.

-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 ①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별로 그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4(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 ①

그러나 해당 민간투자사업(본사업)과 연계하여 시행되는 ‘부대사업’의 경우, 국유·공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하고 그 이익이 사용료 인하 등에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관리 및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제출 대상과 실시협약 정보공개 대상에 ‘부대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부대사업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 의무와 기획예산처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사업(본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 본 사업의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21조제1항 각 호3)에 따른 사업을 의미함. 부대사업을 시

---

주무관청은 법 제51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을 종합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공개해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填)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4항<sup>4)</sup>에 따라 부대사업의 사업비가 해당 총민간사업비의 범위 이내이면서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이와 같은 개정안은 부대사업의 재무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용료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본사업의 운영현황, 추진실적 및 실시협약서 등은 각 주무관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재 어떤 유형의 부대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실시 중인지, 부대사업으로 인한 순이익이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 간에 어떤 비율로 공유되고 있는지 등에 대

-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9.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10.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
  11.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운영 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1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운영 사업
  1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 사업
  17.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 설치·운영 사업
  18. 그 밖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⑭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해당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
  2.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민간투자법 제21조의2<sup>5)</sup>상 주무관청이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유·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재산인 국유·공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하게 되며, 부대사업의 이익은 민간투자법 제21조제1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sup>6)</sup>에 따라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이처럼 부대사업은 정부의 재정투입 및 시설 사용자의 사용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인근 주민 및 시설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부대사업 역시 본사업에 준하는 엄격한 관리와 정보공개가 필요함.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부대사업을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제출 대상과 실시협약 정보공개 대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부대사업의 실시현황, 순이익 등이 공개됨으로써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의 이익을 사용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하

---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유·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해당 국유·공유 재산의 허가권자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권자 등에 대한 허가 등 신청의 대행을 말한다)

2. 해당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업무의 대행

3. 그 밖에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⑮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인하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조의2(부대사업의 시행) ② 주무관청은 법 제21조제1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이익을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 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의 인하, 제37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협약에 반영해야 한다.

는 제도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재무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용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정부는 부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유형을 기존의 17개에서 7개 사업을 추가하여 24개로 확대한 바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부대사업의 실시 현황과 이익 규모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 부대사업의 유형 ]

| 기존(17개)                                                                                                                                                                                                                                                                                                                                                       |   | 추가(7개)*                                                                                                                                         |
|---------------------------------------------------------------------------------------------------------------------------------------------------------------------------------------------------------------------------------------------------------------------------------------------------------------------------------------------------------------|---|-------------------------------------------------------------------------------------------------------------------------------------------------|
| 1. 주택건설사업<br>2. 택지개발사업<br>3. 도시·군계획시설사업<br>4. 도시개발사업<br>5. 재개발사업<br>6. 산업단지개발사업<br>7.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사업<br>8. 물류터미널사업<br>9. 항만운송사업<br>10.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br>11. 노외주차장 설치·운영 사업<br>12. 체육시설업<br>13. 문화시설 설치·운영 사업<br>14. 자연휴양림 조성사업<br>15.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운영 사업<br>16.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 사업<br>17. 건축물의 설치·운영 사업 | + | 1. 역세권개발사업<br>2. 테마파크업<br>3. 장사시설을 설치·조성·관리·운영하는 사업<br>4. 도심항공교통사업 및 버티포트개발사업<br>5. 여객자동차운송사업<br>6.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br>7. 동물장묘업 |

\*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서 그 밖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만, 개정안과 같이 부대사업을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제출 대상과 실시협약 정보공개 대상으로 명시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의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과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추가적으로, 본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운영 중이거나 실시협약이 체결된 기존 부대사업에 대해서도 운영현황 제출 및 정보공개 의무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적용례도 부칙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민간투자사업의 정보공개 대상에 부대사업을 추가하여 제도의 투명성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수용한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①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른 <u>민간투자사업</u> 의 추진방식별로 그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① -----<br>----- <u>민간투자사업(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br>-----<br>-----<br>-----. |
| ② ~ ④ (생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① 주무관청은 <u>민간투자사업</u> 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① ----- <u>민간투자사업(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u> -----<br>-----<br>-----<br>-----<br>-----.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문의처

02)6788-5153